

안산 다문화체험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의견

의안 번호	1584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출자 : 안산시장

1. 제안 사유

- 안산시는 시화반월공단 배후 도시로서 등록외국인이 전체 안산시민의 3.4%인 25,040명에 달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원곡본동은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원곡본동 주민 30,589명중 등록외국인이 9,440명을 차지(30%)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도 153개소에 이르는 등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국내 최대의 다문화 공생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앙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종래의 통제 위주의 관리차원을 벗어나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 안산시는 이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의 외국인전담부서 설치, 거주 외국인지원조례 제정,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각종 정착지원시책 추진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번에 안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문화체험 특구 지정신청은 안산시가 갖고 있는 다문화 공존환경을 “다문화체험”이라는 새로운 관광상품 브랜드로 특화발전 시켜, 지역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안건은 다문화체험 특구 지정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 의회 의견을 청취키 위한 것인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2. 주요내용

가. 특구개요

- 특구명칭 : 안산 다문화체험 특구
- 특구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일원
- 특구면적 : 579,000m²

나. 특화사업

- 생활환경 개선 :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
- 다문화체험 관광 : 다문화카페 건립, 다문화체험관 건립
- 다문화특화 브랜드화 : 만남의 광장 조성, 특화거리 조성
아시아 전통민속 축제

다. 특화사업자 : 안산시장 박주원

라. 재원조달방안

- 사업기간 : 2007 ~ 2011(5년간)
- 총사업비 : 78,221백만원
 - 국비 11,700백만원(13.9%), 도비 7,375백만원(8.8%)
 - 시비 9,166백만원(10.9%), 민자 55,800백만원(66.4%)

마. 규제특례사항

구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완화적용내용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내 외국인 전문요리사 등 전문직업 종사자에 대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 기간 상한 연장(2년에서 3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구법 제22조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내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축제행사 등을 위하여 차량통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구법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토지이용 규제특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구법 제3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지정시 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을 의제 처리 -본 특구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특구지정후 별도 작성하여 승인 요청할 예정(특구지정후 1년 이내 승인요청 가능)

3. 검토의견

- 원곡동지역은 도시개발 초기에 형성되어 지역의 낙후로 도시환경 및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며
- 외국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특화브랜드 향상으로 다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내·외국인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관계법령 발췌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첨부자료 : 안산 다문화체험 특구계획안 1부 .끝.

안산다문화체험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견 제시

안산다문화체험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함.

- 관련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
- 의견

우리시는 전국최초의 외국인 전담부서 설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각종 정착 지원시책 추진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다문화체험 특구 지정신청은 다문화 공존환경을 “다문화체험”이라는 새로운 관광상품 브랜드로 특화, 발전시켜 지역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① 외국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아울러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② 특구지정을 통해 찾아오는 원곡동이 되도록 하고, 다문화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바라며, 아울러 불안정한 치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③ 특구 지정 및 장기발전과 관련하여 외국인당사자 및 지원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조건임을 인지하여 반드시 충분한 논의 속에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공식적으로 특구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체계화하기 바람.
- ④ 거주외국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외국인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 바람.
- ⑤ 현재 4가지의 특례 적용만이 요청되고 있는데, 행정수요 충당,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의식 개선,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등 내용적·근본적 측면에서의 대안과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특례 조항도 검토하기 바람. ex) 외국어로 공문서 발행 등